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7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이수진・이기헌・정태호

한정애 • 민형배 • 임광현

서영교 • 박홍배 • 송옥주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·증가하고 있음.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·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·중독·확산 및 예방·치료·재활·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만,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,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 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'5년'에서 '3년'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·시행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의3제1항 중 "5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	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<u>5년</u>	<u>3년</u>
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	
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	
제출하여야 한다.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